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29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이소영 · 박지혜 · 주철현
강준현 · 권향엽 · 박정현
장종태 · 손명수 · 박홍배
김한규 · 이주희 · 전진숙
임미애 · 박 정 · 이상식
김태선 · 신정훈 의원
(17인)

제안이유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하였으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자가 폭증하고 있어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음. 그러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체계가 부재하여 인공지능(AI) 확산에도 전력산업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현재 전력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립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가 요구되며, 공정한 시장 경쟁과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전문 감독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확대하여 전력정책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상시적인 시장감시·계통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전력산업 규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력시장·전력계통·전기설비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위치,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연계 발전설비의 출력제어 규모 등 전기설비 이용에 관한 정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고, 전력감독원이 정보 공개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전기설비의 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하기 위한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 41조).
- 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평가·조사할 수 있고,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 라. 전기위원회의 독립적인 사무 수행을 명시하고, 의결정족수와 회의
록 작성·공개 등 운영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53조, 안 제58조).
- 마.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전력시장·전력계통 및 전기사업자등
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겸직·파견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전력계통의 신뢰도”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정상인 상태 또는 전력설비 고장 발생 시 전기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과 안전성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제외한다)를”을 “제외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의결(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이용요금과”를 “이용요금, 송전·배전망 접속 또는 연계 기준과 발전기의 출력제어를 전제로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

의 출력제어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를”을 “심의 · 의결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심의를”을 “심의 · 의결을”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를 “하며, 제6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감독원(이하 “전력감독원”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을 “심의 · 의결을”로 한다.

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⑥ 전력감독원은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3항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위치
2. 전기설비의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3. 전기설비의 부하율
4. 전기설비에 연계된 발전설비의 출력제어 규모

5. 그 밖에 전기설비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전력감독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력시스템의 신뢰도 유지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2조제1항 중 “같다)”를 “같다) 또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심의를”을 각각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제외한다)를”을 “제외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역전기사업자”를 “구역전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송배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송배전사업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변전설비계획 또는 배전설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송배전사업자들은 제2항에 따른 설비계획의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시”를 “매년 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들”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본문·단서 중 “심의를”을 각각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41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하기 위하여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전력계통의 물리적·사이버보안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을 위해 국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전기사업자등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접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후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하여 평가·조사할 수 있고, 그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전력거래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에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

10의4.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법률 제21462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에 따른 과징금

제53조의 제목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전기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을 “구성,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로, “심의와”를 “심의·의결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4조의 제목 “(위원의 자격 등)”을 “(전기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를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고, 같은 항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④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명되기 이전 5년간 제55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임명 후 임기종료일 전까지 체결·갱신·변경된 계약도 같다.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전기위원회의 위원장)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②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제54조의3(위원의 임기)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5조의 제목 “(위원의 신분보장)”을 “(위원의 신분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임”을 “면직”으로 한다.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전기위원회의 소관사무)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전력시장·중개시장 및 전기사업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전력계통 운영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관한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

4. 전력거래 관련 이용요금, 약관 등에 관한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 및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심의사항”을 “심의·의결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 등”을 “운영, 전력수급의 안정,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27조에 따른 송전·변전설비계획, 배전설비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13의2. 제41조에 따른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

13의3. 제45조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13의4. 제6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력감독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③ 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의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건의

할 수 있다.

제58조의 제목 “(의결정족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전기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전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의 고위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전기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중 “그 업무를”을 “심의·의결사항 및 재정에 관한 사전 검토 또는 필요한 자문을”로 한다.

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6장의2(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한국전력감독원

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 ① 전기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 이에 관련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조사·감시·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한다.

- ② 전력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0조의3(사무소) ① 전력감독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60조의4(설립등기) ① 전력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의5(정관) ① 전력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0조의6(업무)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 및 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2.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의 허가·등록, 약관, 요금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

3. 전기품질 유지, 전기설비의 이용, 정보공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4. 송전·변전, 배전 설비계획 조사·평가 및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5. 제15조에 따른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
6. 제16조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
7.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감시·평가 및 조사
8.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검토 및 지원
9. 제57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裁定)에 대한 지원
10.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및 중개시장의 소규모전력자원 모집·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지원
1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분석 보고서의 발간
12.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교육 및 국제협력
13. 전력시장·중개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 기준 마련 및 정보 공개·전력정보 통합플랫폼에 대한 조사 및 평가
14. 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5. 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부수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감시, 조사 및 평가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7(운영재원)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60조의9에 따른 분담금

②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력감독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0조의8(출연금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9(분담금 등) ① 전력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등은 분담금을 전력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10(업무의 독립성·중립성 등) ① 전력감독원은 소관 업무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 대상에 대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들은 전력감독원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를 통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전력감독원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⑤ 전력감독원은 임직원과 감독 대상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감독 대상과의 파견·겸직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11(관리·감독) ① 전력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실적을 전기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6제1항에

다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0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전력감독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0조의1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14(「민법」의 준용) 전력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전기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관한 업무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 마련

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한 평가·조사

제9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력감독원의 임직원

제10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0조의1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108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0조의12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준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한국전력감독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력감독원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

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고, 전력감독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전력감독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전력감독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3조(전기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이 법에 따른 새로운 위원장 및 위원이 구성되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한 허가 등 행정처분은 이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한 허가 등 행정처분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4. (현행과 같음) <u>14의2. “전력계통의 신뢰도”란</u> <u>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u> <u>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정상</u> <u>인 상태 또는 전력설비 고장</u> <u>발생 시 전기사용자가 필요</u> <u>로 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u> <u>줄 수 있는 적정성과 안전성</u> <u>을 말한다.</u>
15. ~ 21. (생 략)	15. ~ 21. (현행과 같음)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u>심의</u> 를 거쳐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심의 · 의결을</u>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 합병 등) ① (생 략)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 합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② ~ ④ (생략)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② -----

-----.

----- 심의·의결을 -----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

----- 심의·
의결-----
----- 제외한다)을 ----

-----.

1.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
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2. (생략)

⑥ ⑦ (생략)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
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
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 5억
원 -----
----- 이 경우 전기위원회 심
의·의결(허가권자가 시·도지
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
한다)을 거쳐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⑥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

이용요금, 송전·배전망 접속
또는 연계 기준과 발전기의 출
력제어를 전제로 접속을 허용
하는 경우의 출력제어 기준 등
-----.

② -----

-----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생략)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심의·의결을
-----.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사업자등 -----

----- 하며,
제6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감독원(이하 “전력감독원”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

----- 심의·의결을

<신 설>

5. 그 밖에 전기설비 이용에

<u><신 설></u> <u><신 설></u> 제21조(금지 행위) ① 전기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u><신 설></u> ② (생략)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 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u>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③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조사 및 평 가하여야 한다. ④ 전력감독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전기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 행위) ①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 ----- ----- ----- ----- -----
--	--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같다) 또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

-----.

② -----

----- 공무원 또는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

----- 심의·의결을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심의·의결을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

----- 심의·의결-----

----- 제외한
다)을 -----

-----.

②·③ (생략)

<신설>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으로 한다.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① ----- 구역전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송배전사업자등”이라 한다)-----

② 송배전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변전설비계획 또는 배전설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송배전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른 설비계획의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생략)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평가 및 조사 등(이하 “전력계통의 신뢰도 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기사업자등은 -----
-----.

③ -----

----- 매년 실시-----
-----.

④ -----

-- 전기사업자등-----
-----.

-----.

⑤ -----

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34조(차액계약) ① ~ ③ (생략)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의 공개) ①·② (생략)

----- 심의·의결을 -----

----- 전기사업자등-----

-----.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심의·의결을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차액계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심의·의결을 -----.

----- 심의·의결을 -----.

제41조(정보의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하기 위하여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전력계통의 물리적·사이버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신 설>	<u>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이 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u> ⑤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4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을 위 해 국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전기사업자등 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접 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u>
<신 설>	⑥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 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u>
<신 설>	⑦ <u>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보 통 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 ② (생 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 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심의·의결을</u> -----.

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6. <u>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u> <u>에 관한 사항</u> 7. (생략)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 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u>소규모전력자원 모집·관리</u> <u>등의 분쟁조정</u>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u>전기사업자</u>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	④ -----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 제7호와 같음)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심의·의결을</u> -----. ④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 <u>전기사업자등</u> ----- ----- -.
---	---

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
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
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
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하여 평가·조사할
수 있고, 그 지시가 위법·부
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의결을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④ -----

-----.

---- 전기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

제49조(기금의 사용) -----

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 용한다. 1. ~ 10. (생 략) 10의2. 삭 제 <u><신 설></u> <u><신 설></u> 11. · 12. (생 략)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u><신 설></u> 1.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3조(<u>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 성</u>)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 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 회를 둔다.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3. <u>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u> 10의4. <u>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u> 11. · 12. (현행과 같음)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 ----- ---. 1. <u>제24조에 따른 과징금</u>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u>전기위원회의 설치</u>) ① - ----- ----- <u>조성, 전력계통의 신뢰 도 유지</u> ----- <u>심의 · 의결 및</u> ----- ----- ----- -----. ② <u>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 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u>
--	--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신설>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써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한다.

<삭 제>

<삭 제>

제54조(전기위원회의 구성) ①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
-----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사람

3. ~ 5. (생략)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
직기간은 합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신설>

3. ~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 -----
-----.

<삭제>

④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
명되기 이전 5년간 제55조의2
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개하여야 한다. 임명 후
임기종료일 전까지 체결·갱신
·변경된 계약도 같다.

제54조의2(전기위원회의 위원장)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
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②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
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신 설>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신 설>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2. (생략)

<신 설>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제54조의3(위원의 임기) ① 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

-- 면직 -----

1. 2.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전기위원회의 소관사무)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u>전력시장·중개시장 및 전기사업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u> 3. <u>전력계통 운영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관한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u> 4. <u>전력거래 관련 이용요금, 약관 등에 관한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u> 5. <u>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u> 6. <u>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u>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u> 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 ----- --- <u>심의·의결</u> ----- -----.
1. ~ 10. (생략) <u><신설></u>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u>제27조에 따른 송전·변전설비계획, 배전설비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u>
11. ~ 13. (생략) <u><신설></u>	1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u>제41조에 따른 정보 공</u>

<신 설>

<신 설>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

13의3. 제45조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13의4. 제6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력감독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14. -----
-- 심의·의결사항-----

15. ----- 심
의·의결을 ---

② -----

----- 운영, 전력수급의 안정,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 등 ---.

③ 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의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건의할 수 있다.

제58조(회의) ① 전기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

<신 설>

<신 설>

<신 설>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전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의 고위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기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전문위원회) ① -----
---- 심의·의결사항 및 재정
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필요한
자문을 -----.

② (생략)

제60조(조직 및 운영) <신설>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조직 및 운영) ① 전기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6장의2 한국전력감독원

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 ① 전기위원회의 지도
· 감독을 받아 전력시장 및 전
력계통과 이에 관련된 전기사
업자등에 대한 조사·감시·감
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법인으로 한
다.

③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0조의3(사무소) ① 전력감독
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분원,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60조의4(설립등기) ① 전력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0조의5(정관) ① 전력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을 변경

<신 설>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0조의6(업무) ① 전력감독원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
및 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
도개발 지원

2.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의
허가·등록, 약관, 요금에 관
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

3. 전기품질 유지, 전기설비의
이용, 정보공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4. 송전·변전, 배전 설비계획
조사·평가 및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5. 제15조에 따른 송전용·배
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기
술적 검토 및 지원

6. 제16조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기
술적 검토 및 지원

7.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
반에 대한 감시·평가 및 조
사

8.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검토 및 지원
9. 제57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裁定)에 대한 지원
10.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및 중개시장의 소규모전력자원 모집·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지원
11.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분석 보고서의 발간
12.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교육 및 국제협력
13. 전력시장·중개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 기준 마련 및 정보 공개·전력정보 통합플랫폼에 대한 조사 및 평가
14. 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5. 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신 설>

<신 설>

사업에 부수한 업무로서 정
관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감시, 조사
및 평가의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7(운영재원) ① 전력감
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출
연금 및 보조금

2. 제60조의9에 따른 분담금

②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
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
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
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력감독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0조의8(출연금 등) ①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감독원
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금을 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신 설>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9(분담금 등) ① 전력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등은 분담금을 전력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0조의10(업무의 독립성·중립성 등) ① 전력감독원은 소관 업무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 대상에 대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등은 전력감독원의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를 통하는 경우에도 같다.

<신 설>

③ 전력감독원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⑤ 전력감독원은 임직원과 감독 대상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감독 대상과의 파견·겸직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11(관리·감독) ① 전력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실적을 전기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6

	<u>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60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전력감독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u><신 설></u>	<u>제60조의1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제60조의14(「민법」의 준용) 전력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전기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u>

④・⑤ (생략)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2. (생략) <u><신설></u> 제10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u> 1. <u>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관한 업무</u> 2. <u>제41조제3항에 따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 마련</u> 3. <u>제45조제3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한 평가·조사</u> ④・⑤ (현행과 같음)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전력감독원의 임직원</u> 제102조(벌칙) ① ----- ----- ----- -----.
---	--

1. ~ 5.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3. ~ 6. 삭 제 <u><신 설></u> 7. (생 략) ② · ③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60조의13을 위반하여 비 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6의2. 제60조의12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